

인사청문회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2016년 8월 22일

제 안 자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메트로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

1. 주 문

- 지방자치단체장이 각 산하기관 기관장 선임시 경영능력과 정책수행 능력을 검증하여 인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인사 청문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내실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함

2. 제안이유

- 서울시는 그간 제기되어 왔던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 및 오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사전 검증을 통해 유능하고 투명한 인재를 선발코자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간 협약을 체결하여 시행중이지만 협약에 의한 제도로서 법적 근거가 미약한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이는 현행 지방자치법 상 임명·위촉의 권한이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인사청문회 제도를 조례에 근거할 경우 상위법 위반으로 인해 조례제정이 불가능한 상황임

-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인 검증시스템을 갖춘 인사 청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산하기관장 임명 전에 실시하는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보다 내실 있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기타사항: 없음

4. 이 송 처

가. 국 회 : 국회의장

나. 정 부 : 행정자치부장관

인사청문회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장으로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측근들이 임명됨으로써 낙하산 인사 및 보은 인사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현행 법령에서 산하기관장의 인사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맡겨 두고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해당 분야의 경험이 전혀 없는 비전문가가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장으로 임명됨으로써 해당 기관의 체질을 개선하기 보다는 업무 파악에 많은 시간이 걸려 관련 기관의 방만 경영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 2015년 8월 17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간 협약을 체결하여 서울시 5개 공기업 기관장 선임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유능하고 투명한 인재를 선발하는데 노력하고 있지만 협약에 의한 제도로써 법적 근거가 미약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서울시 뿐만 아니라 인천, 대전, 경기도, 광주 등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대부분 협약 및 지침에 의한 간담회 형식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현행 지방자치법 상 신하기관장에 대한 임명·위촉의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하위법규인 조례에서 이를 제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조례제정이 불가능하여 차선책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이제는 자치단체장의 기관장 선임시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인 검증시스템을 갖춘 인사청문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능력 있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적 자질을 가진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지방행정의 성공을 위한 핵심과제임을 고려할 때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6. 8.

서울특별시회의의원 일동